

교육컨텐츠위원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수자원학회 교육컨텐츠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함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자원 관련 교육컨텐츠 개발, 제작, 배포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학부 및 대학원 수자원 분야 강의 교과목 관련 전공 교육컨텐츠
2.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 관련 교양 교육컨텐츠

제3조(구성·운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중 학술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회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컨텐츠 주제 선정)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주제를 선정한다.

- ①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강연주제를 선정한다.
- ② 우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다.

제5조(컨텐츠 강연자) ① 위원회는 강연 주제에 부합하는 강연후보자를 추천하고, 회장단에서 결정한다.

② 학회는 강연자에게 소정의 강연료를 지급한다.

제6조(교육컨텐츠 담당위원) ① 위원장은 컨텐츠별 1~2인의 담당위원을 선정하여 컨텐츠 제작 실무를 담당하게 한다.

② 학회는 담당위원에게 제작 실무 추진에 필요한 활동비를 포함한 자문료를 지급한다.

제7조(교육컨텐츠 게시 승인) 교육컨텐츠의 게시를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후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.

제8조(저작권) ① 교육컨텐츠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컨텐츠 제출시 학회에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컨텐츠 강연자가 해당 컨텐츠를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때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9조(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의 발의로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의 재가를 받는다

부 칙

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